

2021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2021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목차



1

옴부즈만 제도 소개

- | | |
|---------------------|----|
| ① 옴부즈만의 개념 | 06 |
| ②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 06 |
| ③ 옴부즈만 설립·운영의 4대 원칙 | 07 |

2

시민 옴부즈만의 구성

- | | |
|-------------------------|----|
| ① 도입배경과 추진 경과 | 10 |
| ②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소개 | 11 |
| ③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직무관할 및 기능 | 12 |
| ④ 고충민원 처리절차 | 13 |



3

시민 옴부즈만 운영

① 시 홈페이지 개설	16
② 시민 옴부즈만 제도 홍보	17
③ 언론보도	22
④ 시민 옴부즈만 역량 강화	27
⑤ 적극행정 면책 규정 마련	29

4

시민 옴부즈만 운영 성과

① 총평	32
② 2021년 고충민원 현황	32
③ 주요 민원처리 사례	34

5

참고자료

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54
② 면책 관련 규정	62
③ 찾아오시는 길	65



2021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1

옴부즈만 제도 소개

- 옴부즈만의 개념
- 옴부즈만의 제도의 필요성
- 옴부즈만 설립·운영의 4대 원칙

1. 옴부즈만의 개념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으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말함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복잡화 전문화 경향

-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행정권 강화 현상은 행정재량권의 확대를 초래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증대
- 행정재량의 영역은 복잡·다양하여 국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이며, 사법제도로 다루기에는 추상성을 띠고 있어 통제 곤란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

- 사법적 구제수단의 경우 사후통제 수단으로 소송비용이 고가이고 절차나 방법 또한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용에 어려움
- 행정의 국민권익 침해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

-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 완충 역할 및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어 유용한 장치로 기능
- 특히 법규만능주의, 소극적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지자체가 신속히 시정 조치함으로써 민원인의 심리적·경제적 비용 최소화



3. 옴부즈만 설립 · 운영의 4대 원칙

독립성



독립성은 효율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되기 위해 핵심적으로 정의되는 원리임

- 기구의 독립 : 권력의 일부가 되어서도 안되며 충분한 위상을 확보해야 함
- 기능적 독립 :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하며 어떤 수직적 조직체계에 부속되어서는 안됨
- 기능적 독립 : 옴부즈만의 결정을 위해 충분한 조사, 접근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함
- 법 적 지 위 : 임기의 보장, 선임절차 등 반드시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공정성



옴부즈만은 이해관계의 충돌의 가져올 수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활동, 고용 및 사업관계와 거래활동을 삼가야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자신 스스로 기피해야함

비밀보호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옴부즈만 조사에 응한 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두려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은 통상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호할 수 있음

신뢰성 있는 심리 절차



어느 누구라도 수수료 없이 옴부즈만에게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옴부즈만은 충분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조사의 범위와 방식을 포함하여 민원이 접수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명확해야하고 투명해야 함

2

시민 옴부즈만의 구성

- 도입배경과 추진 경과
-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소개
-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직무관할 및 기능
- 고충민원 처리절차

1. 도입배경과 추진 경과

가. 도입배경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나.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다. 추진 경과

2020. 12. 15.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02. 06.	시민 옴부즈만 운영 방침 결정
2021. 06. 07.	시민 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
2021. 07. 05.	시민 옴부즈만 공개모집 재공고
2021. 07. 19.	시민 옴부즈만 공개모집 3차 공고
2021. 08. 02.	시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개최
2021. 08. 20.	공주시의회,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
2021. 08. 24.	시민 옴부즈만 위촉
2021. 09. 01.	시민 옴부즈만실 개소(운영)
2021. 09. 15.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민 옴부즈만 위촉〕

2.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소개

가.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공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 또는 시민권익 보호제도

나.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 구성인원 : 1명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운영형태 : 집행부 소속의 독임제형
- 활동 요일 및 시간 : 화, 수, 목 / 09시~18시
- 장 소 : 공주시청 뒤편 시민 옴부즈만 사무실
- 지원인력 : 공주시 소속 공무원 1명

2021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현황



박 승 구

시민 옴부즈만 (2021.08.24. ~ 2023.08.23.)

(전) 공주시 경제도시국장(행정사)

라. 시민 옴부즈만 사무실



3.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직무관할 및 기능

가. 직무관할

- 공주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
- 공주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공주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나. 주요 기능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처리

- 시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 직원조사 시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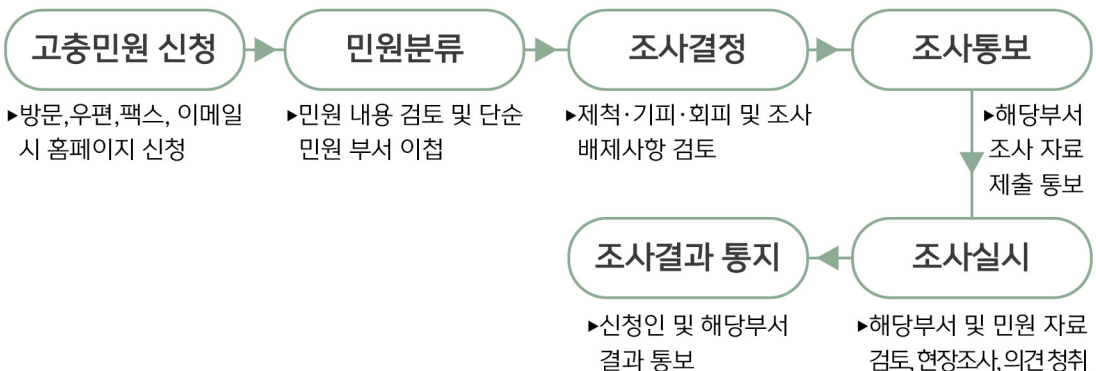
※ 조사 제외 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시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 직무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시민 옴부즈만의 조치(결정) 유형

시정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의견표명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조 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합 의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4. 고충민원처리절차



※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 가능

※ 처리기한 :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2021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3

시민 옴부즈만 운영

- 시 홈페이지 개설
- 시민 옴부즈만 제도 홍보
- 언론보도
- 시민 옴부즈만 역량 강화
- 적극행정 면책 규정 마련

1. 시 홈페이지 개설

공주시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시민 옴부즈만

공주시 | 문화관광 | 온누리공주 | 고맛나루장터 | 365미디어홍보관 | 공주시의회

Home | Language

전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주시

코로나19 현황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참여소통 | 시정소식 | 공주소개 | 분야별정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찾아볼까요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 참여소통 > 시민옴부즈만 > 시민옴부즈만 소개

참여소통

시민옴부즈만 소개

시장에게 바란다

열린 시장실

시민참여

시장제언

신고센터

적극행정

공주시에 바란다

주민참여예산

여성인재DB

시민 옴부즈만 소개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이란?

공주시 또는 시 소속기관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고통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1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낯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으로 시민의 고통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구성현황

- 구성인원 : 1명
- 임기 : 2년(연임 1회 가능)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 참여소통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 안내

고충민원 신청 대상

공주시 또는 시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1

신청 제외 대상

- 공주시의회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 및 도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고충민원 신청 방법

2. 시민 옴부즈만 제도 홍보

가. 홍보 리플릿 제작

제작 수량 : 4,000부

배포 : 각 실과, 읍·면·동(이장회의 등 각종 단체 회의 시 시민 홍보)

2021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읍·면·동 배부(이·통장 문서함)



이·통장 회의 시 리플릿 비치

나. 포스터 제작

제작 수량 : 40부

배포 : 민원토지과, 읍·면·동



다. 입간판(배너)

제작 수량 : 3개

설치 : 본청 입구, 민원토지과, 옴부즈만실 입구



라. 현수막

제작 수량 : 20장

게첨 :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 및 동지역 행정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마. 홈페이지 배너

공주시 | 문화관광 | 은둔리공주 | 고맏나무정터 | 365다이어리보관 | 공주시의회

Home | Language | 전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주시 | 코로나19 현황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참여소통 | 시정소식 | 공주소개 | 분야별정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찾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 1500 | 무형문화유산 50년 | 공주시민 1500년

소식 | 민원 · 행사

주요뉴스 | 시민참여 | 1/11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

시민의 편에서 고충을 해결해드립니다. 고충민원을 신청해주세요.

신청대상 공주시 또는 시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인터넷

인터넷 신청 공주시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시민옴부즈만

문의 041-840-2088

공주시장 김정섭입니다.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신바람 나는 공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연관사항 | 공약사업 | 시장에게 바란다
사정제언 | 업무조사 | 투표

바. 시 공식 SNS :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사. 홍보 전광판 : 3개소(봉황동 별관, 공주대교, 청사 현관)



KOR 충청남도 공주시
www.gongju.go.kr

21

3. 언론보도

가. 시민 옴부즈만 위촉

중부매일

2021년 08월 26일 (목)
13면 지역

시정 감시자 '시민 옴부즈만' 위촉

공주시, 청렴 행정 구현·고충 민원 합리적 조정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할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옴부즈만 1명을 위촉했다.

시민 옴부촉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초대 시민 옴부즈만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을 받은 뒤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층 면접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위촉됐으며, 앞으로 시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고충 민원을 조사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충 민원 신청은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에 방문해 상담 및 고충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및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민 옴부즈만 위촉식.

/ 공주시 제공

이지 참여소통란(시민옴부즈만)을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감사정보담당관 (☎041-840-2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병학 감사정보담당관은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인 / 공주

13.9 X 16.8 cm

大田日報 08월 26일 (목)
11면 지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

【공주=공주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할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옴부즈만 박승구 전 국장을 위촉해 본격적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시민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초대 시민 옴부즈만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을 받은 뒤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층 면접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위촉됐으며, 앞으로 시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고충 민원을 조사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원우 기자
6.7 X 8.2 cm

충청신문 2021년 08월 26일 (목)
14면 지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한다

시정 감시·시민 권익 보호

공주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할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24일 옴부즈만 1명을 위촉했다.

시민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초대 시민 옴부즈만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을 받은 뒤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층 면접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위촉됐으며, 앞으로 시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고충 민원을 조사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김정순 기자 1009@kdlj.com
11.1 X 10.9 cm

忠南日報 2021년 08월 26일 (목)
11면 지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박승구 前 산업국장 위촉
시민 권리·이익 보호 목표**

공주시는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할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24일 옴부즈만 1명에 대해 박승구 전 산업국장을 위촉했다.

시민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초대 시민 옴부즈만은 공개 모집

을 통해 지원을 받은 뒤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층 면접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위촉됐다. 앞으로 시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고충 민원을 조사하는 등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충 민원 신청은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에 방문해 상담 및 고충 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및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감사정보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김성훈 기자
11.1 X 10.1 cm

중앙매일
2021년 08월 26일 (목)
06면 지역
**시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 옴부즈만 위촉
공주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할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24일 옴부즈만 1명을 위촉했다.

시민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초대 시민 옴부즈만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을 받은 뒤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심층 면접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위촉됐으며, 앞으로 시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고충 민원을 조사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충 민원 신청은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에 방문해 상담 및 고충 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및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란(시민옴부즈만)을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감사정보담당관(☎041-840-2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병학 감사정보담당관은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 / 이철재 기자
5.6 X 19.7 cm

동양일보

2022년 01월 18일 (화)

공주시 시민 불편·고충 ‘내 일처럼 해결’

옴부즈만 제도 시행 후 지난해 14건 민원 접수

공주시가 시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고충 민원 해결에 앞장서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초대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박승구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 출범 후 지난달까지 도로와 환경,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 민원 14건을 접수했다.

이 중 4건은 직접 조사해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상담 완료, 고충 민원이

라 보기 어려운 일반민원 5건은 담당 부서로 이송했으며 1건은 기각했다.

박승구 옴부즈만은 “공주시(행정기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중립적이고 전문적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

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은 공주시청 별관(공주시청 뒷편 해지개길 19-3)에서 화·수·목요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충 민원 신청은 직접 방문해 상담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및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주 유한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忠南日報

2022년 01월 18일 (화)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민원 앞장’

시청별관서 화~목요일 운영

공주시가 시민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고충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초대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박승구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 출범 후 지난달까지 도로와 환경,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 민원 14건을 접수했다.

이 중 4건은 직접 조사해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상담 완료, 고충 민원이라 보기 어려운 일반민원 5건은 담당 부서로 이송했으며 1건은 기각했다.

박승구 옴부즈만은 “공주시(행정기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중립적이고 전문적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

고 있다”며 “시민들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은 공주시청 별관(공주시청 뒷편 해지개길 19-3)에서 화·수·목요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충 민원 신청은 직접 방문해 상담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및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란을 참고하거나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김상훈 기자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고충 민원 해결 '호응'

시민 권리·이익 보호

공주시가 시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고충 민원 해결에 앞장서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초대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박승구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 출범 후 지난달까지 도로와 환경,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 민원 14건을 접수했다. 이 중 4건은 직접 조사해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상담 완료, 고충 민원이라 보기 어려운

일반민원 5건은 담당 부서로 이송했으며 1건은 기각했다.

박승구 옴부즈만은 “공주시(행정기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중립적이고 전문적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

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은 공주시청 별관(공주시청 뒷편 해지개길 19-3)에서 화·수·목요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충 민원 신청은 직접 방문해 상담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및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란(시민옴부즈만)을 참고하거나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사무실(041-840-2088)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영순 기자 7000ys@dailycc.net

공주시 옴부즈만, 도로·환경 등 시민 고충 해결

지난해 출범 후 민원 14건 접수
상담·조사 등 업무 처리 '온힘'

충남 공주시가 시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고충 민원 해결에 앞장서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 후 지난달

까지 도로와 환경,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 민원 14건을 접수 이 중 4건은 직접 조사해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상담 완료, 고충 민원이라 보기 어려운 일반 민원 5건은 담당 부서로 이송했으며 1건은 기각했다. 고충 민원 신청은 직접 방문과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및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란(시민옴부즈만)을 참고하거나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사무실((☎041-840-2088)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공주=이효섭기자

시민 ombudsman, 고충 민원 해결 앞장

공주시, 지난해 14건 민원 접수... 활발히 활동 중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시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시민 ombudsman 제도가 고충 민원 해결에 앞장서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초대 시민 ombudsman으로 위촉된 박승구 ombudsman은 지난해 9월 출범 후 지난달까지 도로와 환경,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 민원 14건을 접수했다. 이 중 4건은 직접 조사해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상담 완료, 고충 민원이라 보기 어려운 일반민원 5건은 담당 부서로 이송했으며 1건은 기각했다.

박승구 ombudsman은 “공주시(행정기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중립적이고 전문적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시민 ombudsman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 ombudsman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주시 시민 ombudsman은 공주시청 별관(공주시청 뒷편 해지개길 19-3)에서 화·수·목요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충 민원 신청은 직접 방문해 상담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및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충청타임즈

2022년 01월 18일 (화)

공주시 시민 고충 민원 해결 앞장

공주시가 시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시민 ombudsman 제도가 고충 민원 해결에 앞장서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초대 시민 ombudsman으로 위촉된 박승구 ombudsman은 지난해 9월 출범 후 지난달까지 도로와 환경,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 민원 14건을 접수했다.

/공주 이은춘기자

중도일보

2022년 01월 18일 (화)

공주 ombudsman 제도

시민 민원 해결사로

지난해 14건 접수해 '권익보호 활발'
4건 상담완료·4건 의견표명 등 활동

공주시가 시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2021년 9월 도입한 시민 ombudsman 제도가 고충 민원 해결에 앞장서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초대 시민 ombudsman으로 위촉된 박승구 ombudsman은 2021년 9월 출범 후 2021년 12월까지 도로와 환경,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 민원 14건을 접수했다.

이 중 4건은 직접 조사해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상담 완료, 고충 민원이라 보기 어려운 일반민원 5건은 담당 부서로 이송했으며 1건은 기각했다.

박승구 ombudsman은 “공주시(행정기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중립적이고 전문적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시

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시민 ombudsman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 ombudsman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주시 시민 ombudsman은 공주시청 별관(공주시청 뒷편 해지개길 19-3)에서 화·수·목요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충 민원 신청은 직접 방문해 상담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고충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및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란(시민ombudsman)을 참고하거나 공주시 시민 ombudsman 사무실((840-2088)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박종규 기자

2022년 01월 18일 (화)

공주 시민 ombudsman 고충 민원 해소 ‘앞장’

市 작년 14건 접수... 시민 권익 보호

[공주] 공주시가 시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시민 ombudsman 제도가 고충 민원 해결에 앞장서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초대 시민 ombudsman으로 위촉된 박승구 ombudsman은 지난해 9월 출범 후 지난달까지 도로와 환경,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 민원 14건을 접수했다.

이 중 4건은 직접 조사해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상담 완료, 고충 민원이라 보기 어려운 일반민원 5건은 담당 부서로 이송했으며 1건

은 기각했다. 박승구 ombudsman은 “공주시(행정기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중립적이고 전문적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시민 ombudsman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ombudsman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양한우 기자

4. 시민 옴부즈만 역량 강화

가. 지방옴부즈만 총청권 세미나 참석

‘21. 9. 7.(화) 14:00 / 아산시청



나. 제2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참석

‘21. 12. 1.(수) 14:00 / 정부세종청사



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과의 업무 연찬

'21. 12. 15.(수) 10:00 /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실



5. 적극행정 면책 규정 마련

- 총리주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03.14.)에서 권익위(지방옴부즈만)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이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시행 2019. 6. 25.]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 183호, 2019. 6. 25. 제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공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공주시 훈령 제301호, 2021.12.15. 일부개정] :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민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21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4

시민 옴부즈만 운영성과

- 총평
- 2021년 고충민원 현황
- 주요 민원처리 사례

시민 옴부즈만 운영 성과

4

총평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은 2021년 9월 1일 출범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14건의 민원을 접수 받았다.

첫해인 2021년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옴부즈만 1인을 위촉하여 별도의 기구 설치 등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

2021년 고충민원 현황

고충민원 처리 현황

합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설명안내	기각·각하	이송
14	-	4	-	4	1	5

민원 유형별 현황

합계	행정일반	교통도로	공원산림	환경위생	상하수도	산업농림	도시계획
14	4	5	1	1	1	1	1

민원 접수 경로별 현황

합계	방문	이메일	전화	우편	팩스
14	10	2	2	-	-

민원 처리결과

연번	민원내용	관련부서	처리결과
1	외국인 체류지 변경 부적절 처리	신관동	의견표명
2	수도관 공사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부과 취소 요청	상하수도과	의견표명
3	마을 진출입로 횡단보도 및 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도로과	이송
4	사유지 매입 요청	도로과 회계과	안내완료
5	금흥1통 공원지역 내 시설물 추가 설치 및 보수 요청	산림공원과 도로과	이송
6	추계리 용목동 마을 진입 도로 확장 요청	도로과	이송
7	○○○ 건축물 관련 소음, 매연, 분진, 일조권, 조망권, 지하수 오염 해소 요청	환경보호과 허가건축과 상하수도과	의견표명
8	국가유공자·유공자 유족 수당 각각 지급 및 공영주차장 100% 무료 사용 요청, 태극기 구입 어려움 호소	복지정책과 교통과 행정지원과	이송
9	농지 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성화 요청	허가건축과 월송동	기각
10	상수도 공사 후 파손된 도로의 복구 요청	건설과	의견표명
11	정안면 인풍리 다른골 소하천 마을 교량 철거로 불편, 교량 복원 신설 요청	건설과	이송
12	자연녹지지역 해제 상담	도시정책과	안내완료
13	불법묘지 관련 사전예고 절차 하자 확인	경로장애인과	안내완료
14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교체에 대한 경위 조사 요청	복지정책과	안내회신



의견 표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 부적절 처리

민원 요지

- 체류지 변경 신청하였으나 신관동 주민센터의 주소입력 전산처리 잘못으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하였음
- 경찰서에서는 고지서를 몇 차례 보냈다고 하나, 받지 못하였고 민원인은 교통법규 추가 위반 과태료가 부과됨. 한번이라도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를 내고 주의를 했을 것임

피신청인의 주장

- 민원인은 ○○○○년 ○○월 ○○일 신관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체류지 변경신고 함
- 체류지 변경신고로 전산처리 및 신분증 수기 기재가 완료 되었지만 착오로 전산에 호수가 기재되지 못함
- 체류지 변경 시 주소지 기재 오류사실과 과태료 미납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과태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증가산금에 대해서 책임이 있음
-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체류지 변경 시 주소기재오류사실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사실관계

- ○○○○년 ○○월 ○○일 신관동장은 체류지변경 주소 수정 완료함
- 시민 옴부즈만이 경찰관서를 방문·상담을 실시한 바, 정황을 참작하여 과태료 ○건, □□□원 증가산금을 제외한 ○건, □□□원 고지서를 재발급 해 주었고 이를 민원인에게 전달하였음
- 민원인은 옴부즈만실을 추가 방문, 억울함을 계속 호소함(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등)

판단

- 체류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행정청에서는 공부정리 및 정확한 주소를 전산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전산에 기재를 누락시킨 것은 담당 공무원의 행정착오라 할 것임

〈체류지 변경 시 주소기재 오류로 자동차 과태료 납부 여부의 인과 관계〉

- 체류지 변경 시 주소기재 오류사실과 과태료 미납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황을 살펴볼때 자동차과태료 가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경찰관서에서 기 부과된 과태료 가산금을 제외한 고지서가 재 발급되었으므로 가산금 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

〈주소기재 오류사실과 질서위반행위의 인과 관계〉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운행 할 때에는 주변의 도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진입 시, 과속 단속 구역은 운전자 인지 할수 있도록 사전 예고판이 1km 후방과 300~500m 후방에 설치되어 있음(경찰서 자문)을 감안 해 볼 때 전적으로 민원인의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위반된 행위임
- 따라서 자동차 과태료는 민원인의 질서행위규제법 제6조(질서행위위반법정주의),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 따라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주소 기재 오류 사실과는 인과관계는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직원교육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결론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운행 할 때에는 주변의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것임
- 그러나 체류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행정청에서 전산에 호수 기재를 누락시킨 것은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라 할 것임
- 따라서 체류지 변경 시 주소기재 오류사실과 과태료 미납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자동차과태료 가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경찰관서에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과태료 가산금을 제외한 고지서가 재 발급되었으므로 가산금 관계는 해소 된 것으로 판단
- 다만 신관동 행정복지센터(신관동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함



의견 표명

수도관 공사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부과 취소 요청

민원 요지

- 공주시가 수도관 교체한 부분에서 2021년 5월 1차 누수 발생, 8월 2차 누수 발생하여 두 번에 걸쳐 각 부분에 대해 자비로 재시공하였음(수도관 수명은 반영구적이라 하나 누수가 발생한 원인은 부실한 자재를 사용 했거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생각됨)
- 1차 공사비 □□□□원, 2차 공사비 □□□□원과 2차 수도요금이 □□□□원이 나와 상하수도과에 민원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개인의 과실이 아닌 관의 공사 부실로 인한 누수를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함. 이에 대한 시정 조치로 누수로 인한 비정상적 요금을 취소하고 평균 수도요금으로 다시 부과해 줄 것과 공사비 보상을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2조2항에 따라 “주 계량기 이후의 옥내 급수설비와 수선비용은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부담하여야 한다.”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 누수공사비는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위 조례에 따라 계량기 보호통 이전 공사 후 옥내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와 수선비용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하자 책임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민원은 8년이 경과된 공사이므로 하자 책임기간 종료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이미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부과하였기 때문에 추가 감면은 어려움

사실관계

- 2021년 5월, 민원인이 상하수도과로 누수 감면 신청하여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사용량의 50%를 감면하여 고지서 재발행 받음

- 2021년 8월, 민원인이 상하수도과로 2차 누수 감면 신청하여 누수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사용량의 50%를 감면하여 고지서 재발행 받음
- 2021년 9월, 민원인이 시청 방문 과거 계량기 보호통 이전 공사시 불량 자재 사용으로 누수 발생 및 수도요금 부과에 부당함을 제기함
- 상하수도과는 당초 공사자료는 보존기간(5년) 경과로 확인이 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통보

판단

〈공주시가 공사한 수도관 공사 누수로 인한 공사비 보상〉

- 시민 움부즈만이 현지 확인한 바, 수도관은 주 계량기 이후의 옥내에 설치된 급수설비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와 수선 비용은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의 공사 부실로 인한 누수를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함〉

- 당초 공사 자료는 보존기간(5년) 경과로 확인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고
-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본 민원은 8년이 경과된 공사로 하자 책임기간이 종료 되었다고 판단됨으로 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

〈수도관 공사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부과 취소〉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이미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부과하였기 때문에 추가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결론

- 공주시가 공사한 수도관 공사 누수로 인한 공사비 보상은 주 계량기 이후의 옥내에 설치된 급수설비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와 수선 비용은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 관의 공사 부실로 인한 누수를 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함에 대하여는 당초 공사 자료는 보존기간 (5년) 경과로 확인되지 않으나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본 민원은 8년이 경과된 공사로 하자 책임기간이 종료된 사항으로 관의 책임은 없다 할 것임
- 수도관 공사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부과 취소에 대해서는 「공주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조에 따라 이미 수도요금을 적법하게 감면 하여 부과 한 사항으로 수도관 공사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부과 취소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 종합적으로 판단 해 볼때 행정청의 처분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된 사항이라 판단됨
- 그러나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현행 조례는 누수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임을 감안 단계별 누수량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의견 표명

○○○ 건축물 관련 소음, 매연, 분진, 일조권, 조망권,
지하수 오염 해소 요청

민원 요지

- ○○면 ○○리 ○○○건축물 관련 소음, 분진 등으로 병원 치료 중(피부염, 눈병, 인후염, 기관지염, 위장장애 등)
- 일조권, 조망권,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 생존권 침해 및 시공 중 건물의 처마 끝이 도로와 접해 있음

피신청인의 주장

〈환경보호과〉 소음, 분진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 법령에 따라 공사 현장 모두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규모(공사 면적 1,000㎡ 이상)가 아니므로 방음 방진벽 설치에 대한 규제 및 행정조치가 어려움
- 다만 소음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평온한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기준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 예정, 향후 소음 민원 재발시 현장 측정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것임

〈허가건축과〉

- (일조권 침해)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하여야 하나 해당 허가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대상이 아님
- (조망권 침해) 건축법 상 별도 규정 없음
- (건물 처마 끝이 도로와 접해 있음) 해당 건축물은 관련법 협의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신고 처리되었고 해당 건물은 건축선(대지경계선)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허가됨

〈상하수도과〉 지하수 오염 및 고갈

- 민원인 입회하에 2개소 지하수 채수 후 수질검사 의뢰하였고 수질검사 결과, 적합 통보 받음

- 공사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었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 없음

사실관계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담당자가 공사 현장 확인 후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민원 사항 전달
- ○○○○년 ○○월 ○○일 공사 현장의 그라인더 작업 시 소음 측정 기준치 이하로 확인, 마을 주민에게 안내하고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이 아니라 행정적 규제가 불가함을 설명
- ○○○○년 ○○월 ○○일 신축공사 현장 소음 계측 결과 기준치 초과, 시공사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허가건축과〉

- (일조권 침해)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해당 허가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대상이 아님
- (조망권 침해) 건축법 상 별도 규정 없음
- (건물 처마 끝이 도로와 접해 있음) 해당 건축물은 관련법 협의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신고 처리되었고 건물은 건축선(대지경계선)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허가됨

〈상하수도과〉 지하수 오염 및 고갈

- 2개소 지하수 채수 후 수질검사 결과, 적합 통보 받음
- 공사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었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 없음

판단 및 결론

-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토목공사의 구조물 용적 합계와 공사면적이 각각 1천㎡ 이상이 아니므로 관련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및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방음 방진벽의 설치에 대한 규제 및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소음, 분진, 대폐밥 등으로 피부염, 눈병, 인후염, 기관지염, 위장 장애 발생, 병원 치료 중 등에 대해서는

본 공사와의 인과관계를 옴부즈만이 확인하기에는 불가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소음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평온한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 기준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주민의 평온한 거주 환경을 유지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이 필요하며 소음 민원 재발 시 현장 측정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도록 의견을 표명함
-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하여야 하나 해당 허가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대상이 아니며 조망권은 건축법 상 별도 규정 사항이 없어 행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해당 건축물은 관련법 협의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신고 처리되었고 건물 처마 끝이 도로와 접해 있음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선(대지경계선)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허가 되었으나 위반 여부는 준공신고 시 확인토록 하고 건축 공사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안내 토록 의견 표명함
- 해당 공사로 토사 유출 및 지하수 오염은 2개소 지하수 채수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지하수 고갈은 해당 공사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지방상수도 사용 방안을 안내토록 의견 표명함



의견 표명

상수도 공사 후 파손된 도로의 복구 요청

민원 요지

- 2011년경 상수도 공사 후 도로복구 과정 중 미흡한 처리로 도로가 파손되었음
- 노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차량 운행 및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 안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조속히 원상복구 요구
- 복구를 요구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라 하나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우니 시에서 적의하게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람

피신청인의 주장

〈상하수도과〉

- 도로 노후화 및 도로측구 파손에 따른 침하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공사의 하자 책임 기간이 2년으로 규정 되어있으며 본 민원은 10년이 경과 된 공사이므로 하자 책임 기간 종료

〈건설과〉

- 파손된 도로의 재포장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10명에서 27명으로 기 사용승낙 징구 시 승낙이 안 되어 재포장이 안됨
- 2020년 구거를 활용한 우회도로 설계 시 주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 미승낙으로 우회도로 개설이 안됨
- 도로의 단락으로 좌측 토사 수로의 유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도로의 부등침하가 일어날 것으로 사료됨
- 토지사용 승낙 시 도로의 전면 재포장은 가능

사실관계

- 해당 도로는 평온하게 잘 사용하였으나 2011년도 상수도 공사 시 도로 중앙을 자르고 상수관을

매설한 후부터 지반이 서서히 가라 앉기 시작하였다 함

- 2021. 12. 8. 옴부즈만이 현지 확인 한 바, 상수도 공사 시 도로 중앙을 자르고 상수관을 매설한 후 콘크리트로 포장된 상태였음
- 현재 산 쪽은 정비되지 않은 자연 발생 구거이며 지속적인 토사 유출로 인해 도로의 부등침하가 계속 발생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사로 동절기 때에는 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주민 통행 시 경사에 따른 미끄럼 등으로 안전사고 및 낙상사고 등의 발생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그동안 도로 원상복구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피신청인 건설과에서는 본 지역에 대한 포장사업을 진행하고자 2019년도 1회 추경(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확보 2019년 00면 00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에 대한 설계 시 토지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으나 승낙을 받지 못함
- 또 다시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3회 추경 예산을 확보 00리 구거활용 우회도로 개설 설계 시 주변 편입지 토지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으나 승낙이 안되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음
- 이런 상황에서 2021. 12. 08. 00리 마을회에서 00리 도로 포장 건에 대한 확약서 제출
 - 마을 상수도 급수 관로 공사로 도로 갈라짐과 침하 현상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 붕괴위험이 나타나고 있음
 - 4~5년 전부터 보수를 건의 하였으나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20여 명의 토지주들이 전국에 산재하여 살고 있어 승낙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해결이 안 됨
 -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속히 유지 보수하여 주시기 바람
 - 만약에 완료 후에 토지주가 나타나서 원상복구 요구 시 00리 마을회에서 원상복구 및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함

판단 및 결론

- 해당 도로는 비 법정 도로로 도로의 노후화 및 산 쪽의 정비되지 않은 자연 발생 구거에서 지속적인 토사 유출로 인해 도로 부등침하가 계속 발생 되고 있으며
- 부등침하에 따른 도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사로 동절기 때에는 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주민 통행 시 경사에 따른 미끄럼 등으로 안전사고 및 낙상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 발생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 그동안 피신청인(건설과장)은 주민숙원사업인 본 건을 해결하고자 두차례의 예산 확보와 설계 등을 추진하며 마을회와 함께 토지 사용승낙서를 징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한 필지 내에 많은 사람들이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전국 각지역에 살고 있는 등으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 파손된 도로의 재포장을 하지 못한 상태임
- 관계법령 등을 살펴 보면 비 법정도로에 대한 재포장 및 유지보수 시 에도 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이 필요 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할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회에서는 2021. 12. 08. 현재 도로 상황으로 도로 옆 배수로 붕괴로 도로 갈라짐이 더욱 심화 되어 발목 빠짐 사고 우려와 차량 사고 위험이 심하여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속히 유지보수를 건의하였고
- 만약 유지보수 완료 후에 토지주가 나타나서 원상복구 요구시 마을회에서 원상복구 및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약속서를 OO리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등의 마을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음
-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원상복구 요구 시 마을회에서 원상복구 및 법적 책임을 진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확고하므로 토지주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낙상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피신청인인 건설과장에게 도로 유지보수 할 것을 의견을 표명함



안 내 종 결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교체에 대한 경위 조사 요청

민원 요지

-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0년부터 해오던 몸펴기운동 프로그램을 2022년도에 온몸체조로 프로그램을 바꾸고 몸펴기운동, 몸살림운동, 한국바른몸운동 연구회 관련 자격 응시자를 강사로 모집하였음. 12년 동안 수강생도 많았던 몸펴기운동 프로그램을 온몸체조로 바꿔 모집하게 된 경위 조사 요청
- 강사의 응시서류 점수와 면접점수 확인 및 면접관과 합격한 몸살림 ○○○과의 관계 조사 요청

피신청인의 주장

- 몸펴기에서 온몸체조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 것은 그동안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강사가 응시할 수 있도록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위원회 절차를 걸쳐 명칭 변경 및 강사를 채용한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

사실관계

- 2021. 08. 27. : 2021년 제3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과목조정과 명칭변경(몸펴기→온몸체조) / 원안 의결
- 2021. 11. 08. : 2021년 제4회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교육문화 및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행복 선도복지」 향상에 기여 할 우수한 강사 공개 채용 기준(안) 심사 / 원안 의결
- 2021. 11. 09. : 202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강사공개 채용 계획 수립
- 2021. 11. 15. : 2022년도 시민행복 선도복지 프로그램 강사채용 공고
(공주시 공고 제2021-2260호)
- 2021. 11. 29. : 서류전형 평정
- 2021. 12. 01. : 202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채용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행공고
(공주시 공고 제2021-2347호)

- 2021. 12. 02. : 202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강사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위원 위촉하고
2021. 12. 03. 면접심사 평정(개인별)
- 2021. 12. 08. : 202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채용 합격자 공고 (공주시 공고 제2021-2409호)
- 현재 코로나19로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휴관으로 강사 위촉은 미정

판단 및 결론

가. 관계법령

-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의2(강사 등) 시장은 교육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 제2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이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2항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선정 및 심의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 공개대상 정보)제1항 제5호, 6호 등

나. 판단 내용

- 2010년부터 해오던 몸퍼기운동을 2022년도에 온몸체조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신청인(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다른 사항 생략’ 프로그램 과목조정(18과목 31개, 프로그램→19과목 30개 프로그램)과 과목반 명칭 변경(몸퍼기 → 온몸체조), 자격증 등에 대하여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2021. 08. 27. 2021년 제3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고
- ‘다른 사항 생략’ 명칭 변경에 있어 몸퍼기운동으로 한정 할 경우 강사 선정 시 폭이 좁아 이를 확대하여 몸퍼기, 몸살림, 바른몸지도자 등이 응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초 몸퍼기를 온몸체조로 명칭 변경과 자격증 등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음

- 강사 채용에 대해서는 2021. 11. 15. 공주시 공고 제2021-2260호로 강사 공개채용을 공고하고 2021. 11. 29. 서류전형 평정을 거쳐 2021. 12. 01. 공주시 공고 제2021-2347호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사실이 있음
- 면접심사는 2021. 12. 02. 면접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평정한 후 2021. 12. 08. 공주시 공고 제 2021-2409호로 강사채용 합격자를 공고하였으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램 운영이 중단 및 휴관된 상태로 강사 위촉은 미정인 상태임
- 강사의 응시서류 점수와 면접점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점수 등을 공개 할 수 없으나 공주 시민 ombudsman이 확인한 바, 상기와 같이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함
- 면접관과 합격한 몸살림 ○○○과의 관계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공주 시민 ombudsman이 조사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임
- 상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교체에 대한 건은 행정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한 사항으로 피신청인(복지정책과장)의 고의나 부당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인 안내하였음



기 각

농지 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성화 요청

민원 요지

- 농지 취득 당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먼저 실행하지 못하고 잔금을 치를 수밖에 없었음
- 전 토지주의 요청으로 계약금을 포기할 수 없어 원상복구 서류에 서명 하였으나 농지 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요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월송동〉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가능함을 안내
- 최근 LH사태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 심사 강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대상임을 재차 안내
- 건축물 양성화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농지전용 신청 관련 허가건축과 통해 안내 : 잔금을 치를 날이 가까워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불가하다는 입장
-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는 담당자의 거듭된 안내
- 민원인 철거 의사와 함께 원상복구서를 미리 제출했고 토지 매도인 측 대리인이 건축물 해체 신고서 제출 : 민원인은 해당 농지의 주변이 곧 개발되어 경작지 모두 바뀔 예정으로 농지 취득하자마자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 건축물 철거를 약속하는 등 민원인의 영농 의지가 강하여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상복구서를 제출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민원인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 대로 건축물 철거, 영농착수 등을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대상인 취득 불가한 농지를 취득한 상태임

〈허가건축과〉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성화 관련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접수,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법에 따라 부서 의견 조회 후 농지전용허가

불허가 처분 사전예고 통지, 제출된 의견 및 ombudsman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농지전용허가 처분 결정

사실관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가능함을 안내
-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는 담당자의 거듭된 안내에 민원인은 건축물 철거 의사와 함께 원상복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였고 토지 매도인 측 대리인이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
- 담당자는 건축물해체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민원인의 영농의지를 믿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농지전용허가 관련〉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접수, 관련법 부서의견 조회
- 농지전용신청 불허가처분 사전통지(의견조회)

판단 및 결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피신청인(월송동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 당시 건축물 해체신고서도 제출하고 건축물 철거를 약속하는 등의 민원인의 영농 의지가 강하여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상복구서를 제출 받아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민원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 제7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 등의 처분 규정과 같은법 제11조(처분 명령과 매수청구)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처분 명령과 매수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같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제1항 제1호 에 따른 제34조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법 제57조 (벌칙) 농지를 소요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피신청인(월송동장)은 민원인에게 농지취득 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 하였음
- 민원인은 불법 건물 철거 의사와 함께 원상복구서를 제출하였고 토지 매도인 측 대리인이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한 사실과 해당 농지의 주변이 곧 개발되어 경작지 모두 바뀔 예정으로 농지를 취득하자마자 건축물을 철거 하겠다고 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 원상복구서 대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영농 착수 등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성화 관련〉

- 농지취득 당시 피신청인(월송동장)은 민원인에게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 취득 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 하였고
- 민원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당시 부지 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하겠다고 농지 원상복구계획서와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을 이전 하였고 본 지역이 2021.06.04. 공주시 고시 제 2021-85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음
- 현 상태에서 본 건을 단순히 불법전용농지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양성화) 건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할 것임
- 양성화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선행으로 이루어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농지법 위반 소지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당시 민원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원상복구계획서 대로 건축물 철거, 영농착수 등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2021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5

참고 자료

-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 면책 관련 규정
- 찾아오시는 길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12.15 조례 제137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연기관 및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주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6.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7. 직원조사 시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8.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9.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옴부즈만의 구성) ① 옴부즈만은 시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

④ 옴부즈만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옴부즈만의 근무일수는 주 5일 이내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할) 옴부즈만은 제3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발·추천을 위하여 공주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옴부즈만의 추천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사업무 담당국장
 2. 시의회 의원 2명
 3.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⑤ 위원회의 위원은 옴부즈만 후보자를 회의의 통해 옴부즈만 추천대상자를 의결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옴부즈만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① 누구든지(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4.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 신고 된 경우
5.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소속기관 등의 직원 및 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 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옴부즈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관할 범위 내에 있는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할 경우 옴부즈만은 소속기관 등에 그 취지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도 및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시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
8. 제8조에서 정한 직무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9.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8조(합의의 권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제출 기회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9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를 하기 전에 해당 소속기관 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 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19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에 따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 등의 장의 통보를 받은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하는 내용이 법률에 따라 제한되거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6조(국민권익위원과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옴부즈만에 대한 협조·지원

- 제27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 제2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옴부즈만은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378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1.09.15 규칙 제60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 옴부즈만 신청 등) ① 시민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기구)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 옴부즈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기구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보수 등)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옴부즈만에게는 급여,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 근무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옴부즈만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근무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등) 조례 제10조제2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제7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의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를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 조사 실시 통보)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 조사제외 등 통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직권에 의한 조사 통보)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할 경우 제8조를 따른다.

제12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통지)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 소속기관 등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권고, 의견표명)서에 따른다.

제13조(고충민원 결정의 통지) 읍부즈만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고충민원 결정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결과와 통보) ① 읍부즈만으로부터 권고(의견표명) 등을 요구받은 시 소속기관 등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를 읍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게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통보서에 따른다.

제15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읍부즈만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보고와 공표 등을 할 때에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 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읍부즈만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공주시의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기구 운영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무기구는「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사무기구 직원은 읍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7조(공인의 사용) ① 읍부즈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허가장, 임용장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刻印)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부즈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공주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읍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603호, 2021.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2021.12.15 훈령 제3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을 포함한다)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 한다. (개정 2011.11.1., 개정 2018.6.1.)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공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 개정 2018.6.1.)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공주시 자체감사규칙」상의 징계 등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1.11.1.)
4.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주시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주의 (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8.6.1.)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공주시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19.7.1.)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 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19.7.1.)
 4. 삭제 (2019.7.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등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2. 3.)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민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3.) (개정 2021.12.15.)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중 법무·감사·인사·심의안전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4.12.26. 2018.12.14., 2020. 2. 3.)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4.12.26., 2020. 2. 3.)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피감사기관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은 공주시 소속기관 및 공무원 등에게 적용하며,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게, 훈계·주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부개정 2018.6.1.]

제15조(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행정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경고 등 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6.1.)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발급 한다.

제19조(기록유지) 경고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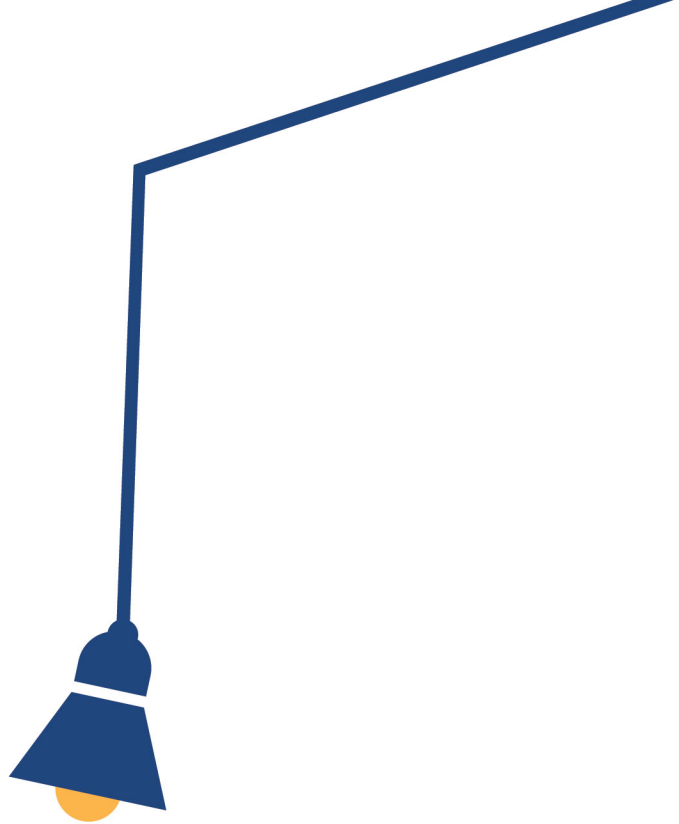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사무실 찾아오시는 길



위치 공주시청 뒤편 (공주시 해지개길 19-3)
 전화 041-840-2088
 이메일 gongjuob@korea.kr



2021년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